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공대학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1조제3항).

II. 검토의견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명칭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용어가 각기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문을 정비한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있으며,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 ----- -----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 ----- -----.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		⑤ ----- ----- ----- -----

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생략)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 ----- -----. ⑧ (현행과 같음)
---	--	---

(전문위원 이 은 정)